

아진전자부품 주식회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진전자부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사회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의무)

1.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이사는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등기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이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직급은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한다.

제5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일시는 의장이 정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 2항의 순서에 의해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6. 이사회 소집 및 기타 이사회에 관한 업무사항에 대해 별도 지원부서를 둔다.

제6조 (회의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집행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경업 및 자기 거래에 관한 사항
5. 신주 발행 및 이와 관련된 사항
6.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7. 장기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성립 및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해당 결의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계자 출석)

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의장은 필요시,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위원회 설치)

1.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타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 의 직속 심의기관인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경영위원회는 상임등기이사 전원과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